



2024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매뉴얼



CONTENTS

I. 산업단지 캠퍼스 개요

1

II. 설립·운영 절차

5

1. 설립 절차 7
2. 설립 요건 및 기준 8
3. 설립 계획 승인 신청 절차 10
4. 설립 인가 신청 절차 14
5. 단계별 조치 사항 16
6. 인가 이후 조치 필요 사항 17

III. 관련 서식

19

1. 계획 승인 신청서 21
2. 설립 인가 신청서 33

IV. 참고자료

43

1. 설립계획 및 인가신청 체크리스트 45
2.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재정지원 사업 현황 48
3. 관련 법령 51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매뉴얼



산업단지 캠퍼스 개요

I. 산업단지 캠퍼스 개요

1 설립 목적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산학협력 시설을 포함한 대학 일부를 이전하여 교육-연구개발-고용의 연계를 통해 대학과 기업을 기능적·공간적으로 일체화한 캠퍼스
- 산업단지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육-R&D-고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시설·장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 구축



2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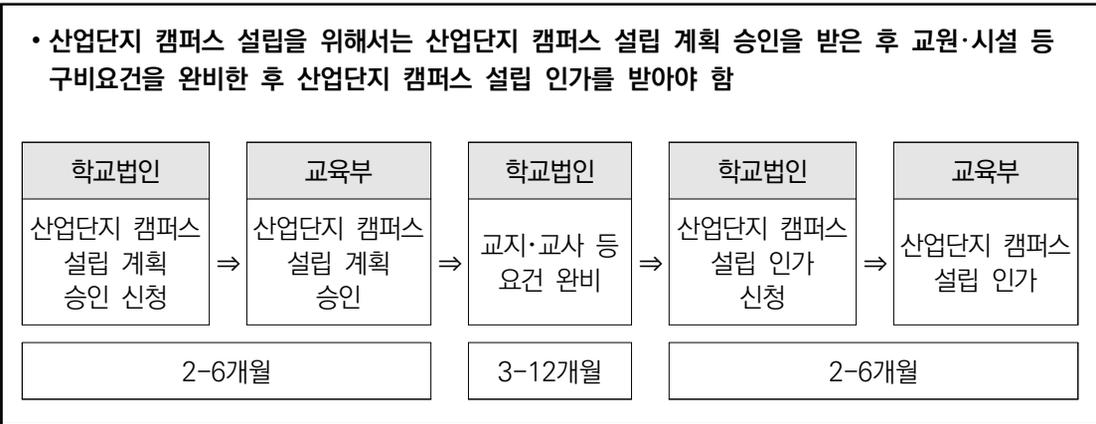


설립·운영 절차

II. 설립·운영 절차

1 설립 절차

- **설립 신청 주체**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에 따라 학교법인이 신청
- **설립 신청 절차**
 - (계획 승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승인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
 - (설립 인가)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
- **소요 기간**
 - 설립 계획신청 후 계획 승인까지 2-6개월
 - 설립 인가신청 후 인가까지 2-6개월



2 설립 요건 및 기준

● 교육연구 여건 확보

- 산업단지의 특성과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전공·계열간 연관성 구비

● 위치

- 본교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의 권역 안에서만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
 -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수도권(수도권 외)으로 구분
-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안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토지(도로 또는 하천은 제외)에 위치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

-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학의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별표의 권역 안에서만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가능한 권역(제6조 제1항 관련)

권역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비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권역

● 교사·교지의 확보

- (소유 여부)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가능(「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
- (안정적 운영 가능성)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에 대한 장기적 사용 방안 수립
 - 교사·교지를 임차하여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최소한 7년 이상 유지 필요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의 임대차 계속 기간 5년을 준용하여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속 기간을 7년 이상 유지하도록 함(재학기간 4년 + 군복무·휴학 등 3년)

- (교사 면적)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교사(교육기본시설 등) 기준면적]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3)

(단위 : m²)

구분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	12	17	20
	운영 중인 대학	12	14			

비고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교지 면적)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 교원 산출기준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6조(교원)에 따라 교원 수 산출

[교원산출기준]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 학
교원1인당 학생수(명)	25	20	20	20	8

※ 대학원대학 및 대학과 대학원이 함께 설립된 경우에는 대학원생수를 1.5배로 가중하여 교원수를 산출함

● 교원인사체제 운영

- (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을 반영
- (교원 업적평가)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 게재 등의 연구 실적으로 대체·환산
- (승진·승급 및 재임용 시)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소로 반영

●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Capstone Design)를 필수 교과목 또는 졸업요건에 포함
- 선취업·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과정(전문대학 제외)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 기업지원 활성화

-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산업체와 상호 협력 및 학생들의 지역 내 산업체 취업을 위한 노력

3 설립 계획 승인 신청 절차

설립 위치 선정 후 교육환경평가

학교법인 ↔ 교육청(지역교육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①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승인 신청**

학교법인 → 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 붙임서류 〉

1.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교무회의 회의록 사본
 3. 이전학과 교수 및 학생 동의서
 4.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등 산학협력
교원인사체제 구축 관련 자료
 5. 교원 확보 관련 부대서류
• 전임교원 총원 확약서 등
 6. 교육과정 개편 관련 자료
 7. 교사 및 교지 확보 관련 부대서류
• 교지·교사 매입(임대차)계약서, 건축설계도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교육환경평가
적합판정 공문, 자금조달 관련 증빙자료 등
- ※ 개교예정일은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고시 12조 ②항)

②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개편
심사위원회 심사
(산업단지 캠퍼스 현장심사)**

〈 처리절차 〉

- ①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신청서 접수 및
내부 검토
- 교육부 내부 검토, 설립 심사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일정 확정
- ②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 심사
- 내부 검토 자료 및 설립 계획서 위원별
송부
- 심사위원회 회의 소집
- 심사위원회 자료 작성
- 심사위원회 심사
- ③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승인 여부 통보
- 심사결과 종합검토 및 설립 계획 승인 여부
공문 발송

③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승인 여부 통지**

교육부 → 학교법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설립 계획 승인시 주요 검토 사항

1 이전위치의 적정성(「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 및 고시 제6조제1항·제2항)

- 이전할 위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야 하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 및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충족해야함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교지)에 따라 동일한 대학의 교지로 보는 경우

1.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 20km 이하인 경우
3. 각각의 교지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경우
4.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 밖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교육환경평가 결과 적합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①항)

-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교육감 승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용이 포함된 교육환경평가서를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할 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참고 작성

-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후 교지·교사 매입 등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교육환경평가 결과 금지 시설이 발견되어 설립 인가가 불가하게 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 계획 신청서 제출 전에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함

3 교육연구 여건 확보의 적정성 여부(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산업단지의 특성과 이전 학과의 연관성 여부
- 산업단지 캠퍼스의 장기적 사용방안 수립 여부

4 산학협력 친화형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여부(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 교육과정에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Capstone Design)를 필수 교과목 또는 졸업요건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선취업·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과정(전문대학 제외)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이 있는지 여부

5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운영 여부(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 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자 우대제도 실시 계획 여부
-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게재 등의 연구실적으로 대체·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업적평가와 승진·승급 및 재임용에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소로 반영하는 계획 여부

6 교육여건 개선 여부(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 기숙사, 장학금 지원 제도 마련 여부
- 본교 - 산업단지 캠퍼스 간 이동수단(셔틀버스, 시내버스 노선 연장 등) 확보 여부
- 식사 해결 방안 및 식비 보조 방안 마련 여부(권장사항)

7 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②항6호)

- 학내의견 수렴 여부
- 학교법인 이사회(교무회의) 의결 여부
- 대학 교직원 및 학생 의견수렴 여부

8 교지확보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 인정 유형 >

- 학교법인이 토지 소유권을 이미 확보한 경우
- 학교법인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가능 재원을 제시하는 경우
- 학교법인이 토지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 개인이 자기 소유 토지를 학교법인에 출연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 개인이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 부담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학교법인에 출연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 기타 교지확보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9 교사확보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 인정 유형 >

- 신축 시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평면도 및 예상 건축비 산정자료를 제출하고 건축재원을 증빙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을 매입·분양·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사용 계획인 경우에는 건물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를 제시하고 해당 비용 확보 방안 제출
- 건물을 기부 받는 경우에는 건물 출연약정서 제출
- 건물을 기부 받고 리모델링 후 사용 계획인 경우에는 건물 출연약정서 및 리모델링 비용 산정 및 확보 방안 제출
- 기타 교사확보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설립 인가 신청 절차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승인



①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신청

학교법인 → 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②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개편
심사위원회 심사



③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여부 통지

교육부 → 학교법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 붙임서류 〉

1.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교무회의 회의록 사본
3. 이전학과 교수 및 학생 동의서
4.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등 산학협력 교원인사체제 관련 자료
5. 교육과정 개편 관련 자료
6. 교사 및 교지 확보 관련 부대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설계도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교육환경평가 적합판정 공문 등

〈 처리절차 〉

- ①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신청서 접수 및 내부 검토
 - 교육부 내부 검토, 설립 심사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일정 확정
- ②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개편 심사위원회 심사
 - 내부 검토 자료 및 설립 인가 신청서 위원별 송부
 -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 심사위원회 회의 소집
 - 심사위원회 자료 작성
 - 심사위원회 심사
- ③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여부 통보

➔ 설립 인가시 주요 검토 사항

1 당초 계획(계획승인 기준) 대비 변경사항 등 적정성 검토(변경사항이 있을 시)

- 교육연구 여건 확보내용의 적정성 등

2 산학협력 친화형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자 우대제도, 승진·승급 및 재임용시 산학협력 요소 반영 여부
- 교육과정에 현장실습학점제 및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선취업·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과정(전문대학 제외)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 과정 편성·운영 여부

3 교지 법정 기준 충족

- 이전 예정 토지에 대해 학교법인의 소유권(또는 임차권) 확보 여부
-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법정 기준 면적 충족 여부

4 교사 법정 기준 충족

- 해당 건물에 대해 학교법인의 소유권(또는 임차권·분양권) 확보
- 해당 건물의 연면적이 법정 기준 면적 충족 여부
- 해당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교)로 지정 여부

5 이행 상황 보고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 설립 계획 승인시 보완 등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 여부

5 단계별 조치 사항

해당기관	조치 사항
학교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수립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위치 선정·교육환경평가·산업단지 내 산학협력 수요 조사 등 사전 준비 - 캠퍼스 설립 계획 수립 및 학내 의견 수렴 - 법인 이사회 의결
↓	
학교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승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요건 검토서 및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요건, 설립 사유, 이전대상, 설립 시기, 교사·교지 확보계획, 자원 조달계획 등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승인 사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요건 구비서류 검토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 개최 추진
↓	
설립 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요건 구비서류 심사 - 설립 사유 및 계획 타당성 심사 - 교사·교지 확보계획, 자원 조달계획,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심사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심사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승인(반려) 통보
↓	
학교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추진 및 설립 인가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지, 교사 등 시설공사, 이전 및 캠퍼스 운영 준비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신청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요건 구비서류 검토 - 운영준비, 계획승인 조건 이행여부 등 포함
↓	
설립 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신청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준비, 승인조건 이행 등 심사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여부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인가(반려) 통보

6 인가 이후 조치 필요 사항

- (교지 지목변경)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이 포함되어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
 - ※ 지목변경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에 근거,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구·군청)에 제출
-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 (학교)로 기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참고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관련 행정 절차

〈 계획 승인 단계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승인 사전 검토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요건 구비서류 검토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 개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국장) - 검토의견
-----	--	--



대학 설립·개편 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심사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요건 구비서류 심사 - 설립 사유 및 계획 타당성 심사 - 교사·교지 확보계획, 자원 조달계획,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 심사 - 분야별 심사 - 현장실사
----------------------	---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심사 결과 통보 - 심의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 계획 승인(반려)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국장) - 심사결과
-----	--	--

〈 설립 인가 단계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신청서 검토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요건 구비서류 검토 - 운영준비, 계획승인 조건 이행여부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국장) - 검토의견
-----	--	--



대학 설립·개편 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신청서 심사 - 운영준비, 승인조건 이행 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 심사 - 분야별 심사 - 현장실사
----------------------	---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여부 통보 - 설립 인가(반려)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국장) - 심사결과
-----	--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매뉴얼



관련 서식

Contents

〈목 차〉

I. 산업단지 캠퍼스의 필요성

1. 대학 개요
 - 가. 본교 현황
 - 나. 산업단지 캠퍼스 개요
2. 계열·학과·전공의 이전 필요성
3.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캠퍼스와의 연관성

II.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

1. 설립 목표
2. 설립 전략 및 추진 방안
 - 가. 교원·교지·교사 확보 계획
 - 나. 교사시설 용도별 구성
 - 다. 교육환경평가 결과

III.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 계획

1. 운영 전략 및 추진 방안
 - 가. 운영 체계 및 역할
 - 나. 연도별 운영 전략 및 추진 방안
2. 기대효과

IV. 산업단지 캠퍼스 투자 계획

1. 이전 경비 조달 계획
2. 자금조달 계획

붙임 : 증빙자료

I. 산업단지 캠퍼스의 필요성 (한글 : 휴먼명조 16pt, 진하게)

1. 대학 개요 (한글 : 휴먼명조 15pt, 진하게)

가. 본교 현황

- 본교 위치 : (한글 : 휴먼명조 15pt)
- 규모

(기준 : 최근 정보공시자료)

구분	교지(㎡) (기준면적)	교사(㎡) (기준면적)	계열별	교원			학생 (입학/편제정원)	
				전임	겸임 초빙	합계	대학	대학원
OO캠퍼스	()	()					/	/
							/	/
							/	/
			합계				/	/

※ 작성요령

- 교지·교사 면적 란 중 기준면적은 ()로 표시

나. 산업단지 캠퍼스 개요 (한글 : 휴먼명조 15pt, 진하게)

- 산업단지 캠퍼스 위치 : (한글 : 휴먼명조 15pt)
- 이전 시기 :
- 이전대상 및 규모

(기준 : 최근 정보공시자료)

구분	학과	교원(명)					학 생 (입학/편제정원)	
		전임			겸임 초빙	합계	대학	대학원
		상근	비상근	소계				
OO캠퍼스							/	/
							/	/
							/	/
	합계						/	/

※ 작성요령

- 이전 대상 학과(학년)의 편제 정원을 기준으로 교지·교사 기준면적 산출
- 상근은 전임교원 중 교수연구실을 본교에서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는 교원

- 입지여건

-

※ 작성요령

- 본교,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캠퍼스를 각각 이격 거리와 함께 지도상에 표현

2. 계열·학과·전공의 이전 필요성

-

3.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캠퍼스와의 연관성

-

※ 작성요령

- 산업단지 일반 현황, 산업집적도 분석 및 산업단지 캠퍼스와의 연관성 기재

II.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계획(한글 : 휴먼명조 16pt, 진하게)

1. 설립 목표(한글 : 휴먼명조 15pt, 진하게)

- (한글 : 휴먼명조 15pt)

※ 작성요령

- 설립 목표(도표나 도식, 서술), OO학과 운영 계획(도표나 도식, 서술)
 - * 본교 교양 및 기초전공(이론) - 산업단지 캠퍼스 심화전공(실습 포함) - 연구개발, Capstone Design, 졸업작품, 인턴쉽 및 현장실습 포함한 학과 운영 계획

2. 설립 전략 및 추진 방안

가. 교원·교지·교사 확보 계획(한글 : 휴먼명조 16pt, 진하게)

1) 교원확보계획(한글 : 휴먼명조 16pt, 진하게)

(기준 : 확보현황은 최근 정보공시자료)

구분	참여교원(명)											
	OO학과				OO학과				OO학과			
	전임		겸임 초빙	소계	전임		겸임 초빙	소계	전임		겸임 초빙	소계
	상근	비상근			상근	비상근			상근	비상근		
법정정원(명,A)												
현원(명,B)												
(산업체경력)	()		()	()	()		()	()	()		()	()
확보율(% ,B/A)												

※ **작성요령**

- 법정정원, 현원, 산업체 경력 교원은 이전하는 학과(학년)의 편제정원 비율로 산출
- 겸임·초빙교원은 주당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인원을 기재하며, 산업체 경력은 3년 이상
 - 전체 겸임·초빙교원 수업시수를 합산하여 9로 나누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설립 인가 신청 시까지 편제완성 정원 기준 법정 교원 수의 1/2이상을 충족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개교 예정일 전까지 학생 정원기준에 따른 법정 교원 수 이상 총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
 - 편제완성년도 전까지 확보해야하는 교원에는 전임교원 외에도 겸임교원 등 포함 가능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4항,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

2) 교지 및 교사 확보 계획

① 산업단지 캠퍼스 조감도(한글 : 휴먼명조 16pt, 진하게)

- (한글 : 휴먼명조 15pt)

※ **작성요령**

- 산업단지 캠퍼스 조감도(도식), 교육용 기본시설 및 주요시설 표기

② 확보 계획(한글 : 휴먼명조 16pt, 진하게)

○ 교지

계열별	학과	학생정원 (명)	확보 현황			소유 현황		
			기준 (㎡)	확보 (㎡)	확보율 (%)	설립주체 소유	공동소유	임차
OO계열	OO학과					○		
	OO학과							
	소계							
OO계열	OO학과							
	OO학과							
	소계							
합계								

○ 교사

계열별	학과	학생정원 (명)	확보 현황			소유 현황		
			기준 (㎡)	확보 (㎡)	확보율 (%)	설립주체 소유	공동소유	임차
OO계열	OO학과					○		
	OO학과							
	소계							
OO계열	OO학과							
	OO학과							
	소계							
합계								

③ 안정화 방안(임차시 작성)

- (한글 : 휴먼명조 15pt)

※ 작성요령

- 교사·교지를 임차하여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7년 이상 유지 필요

나. 교사시설 용도별 구성 계획

구분		면적(m ²)	실수	비고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			
지원시설	체육관			
	...			
연구시설	일반	연구용실험실		
		...		
	산학	산학융합연구실		
		Business Lab.		
		Information Center		
기타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등		

*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의 구분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별표2에 의함

다. 교육환경평가 결과 : 적합(증빙자료 첨부)

III.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 계획(한글 : 휴먼명조 16pt, 진하게)

1. 운영 전략 및 추진 방안(한글 : 휴먼명조 15pt, 진하게)

가. 운영 체계 및 역할(한글 : 휴먼명조 15pt, 진하게)

○

※ 작성요령

○ 추진체계(도표 및 그림),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 조직 및 역할 기재

나. 연도별 운영 전략 및 추진 방안

○

※ 작성요령

- 연도별 운영 전략 및 추진 방안
 - *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추진 내용 기재, 본교와 산업단지 캠퍼스간의 역할 분담

1) 산업현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

*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원업적평가 규정, 교원인사규정 등 관련 자료 별첨

구분	단과대학	학과	교원업적평가							재임용·승진심사	
			산학협력 실적 반영 비율	산학협력 중심형 평가 가능 여부	SCI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배점					연구실적물 최소기준 설정 여부	산학협력 실적물 연구실적물 최소기준 대체 가능 비율
					기술 이전 (1천만원)	기술 자문 (10회)	국내 특허 등록 (1건)	해외 특허 등록 (1건)	산학협력 공동 연구 (1천만원)		
현행											
변경											

※ 작성요령

- 【단과대학】 : 단과대학별로 현황이 다를 경우, 분리하여 기재. 전체 단과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통적용'으로 기재
- 【학과】 : 단과대학 내 학과별로 현황이 다를 경우, 분리하여 기재. 단과대학 내 전체 학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통적용'으로 기재
- 【산학협력 반영 비율】 : 교원업적평가지 총 점수에서 산학협력 영역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산학협력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 【산학협력 중심형 평가 가능 여부】 : 교원업적평가 규정상 학과별 또는 교수별로 적용가능한 '산학협력 중심형' 평가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
- 【SCI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배점】 : SCI 논문 1편당 교원업적평가 반영 점수를 100점으로 할 경우, 각 산학협력 지표의 상대적 점수를 기재
- 【연구실적물 최소기준 설정 여부】 : 재임용·승진심사 시 연구실적물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대체 가능 비율】 : 재임용·승진심사 시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최소기준을 대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비율을 기재. 연구실적물 최소기준이 없거나,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최소기준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 (예) 승진 시 연구실적물 최소기준이 논문 6편(또는 100점)이고, 산학협력 실적으로 최대 논문 3편(또는 50점)까지 대체 가능한 경우, 50%로 기재

※ 재임용 또는 승진단계(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별로 대체 가능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평균 비율로 기재

【교원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규정】 : 교원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규정을 PDF 파일로 첨부

〈필수 포함 사항, 고시 제7조〉

- 교원임용 시 산업체 경력자 우대 방안
- 교원임용 시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 70% ~ 100%
- 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 시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게재 등의 연구실적으로 대체·환산 여부 및 정도, 교원업적평가 시 교육, 연구, 봉사 이외에 산학협력 실적 별도 평가 여부를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
- * 교원업적평가 규정은 개정 전후비교표 작성

〈자율 기재 사항〉

- 호봉 산정 시 산업체 근무경력 비율 환산을 제고, 산업체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여부
- 산학협력중점교수제 도입 여부

2) 실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

※ 작성요령

〈필수 포함 사항, 고시 제8조〉

- 정규 교과목으로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Capstone Design) 도입 현황
 - * 현장실습 시기(학기중, 계절학기), 현장실습 업체, 학과별·업체별 현장실습 인원 적시
- 학과별 이수체계도(학년별로 이전할 경우 전공과정, 교양과정, 일반과정의 교육장소 명시)
 - * 이전학과 및 이전학년의 교육과정 전후비교표 작성
- 선취업·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과정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 편성 현황

〈자율 기재 사항〉

- 취업연계형 교육프로그램 개설 여부
- 맞춤형 재학생 진로 지도 교육, 재직자 교육 지원 프로그램
- 산학협력가족회사에 인턴제 확대 및 산학협력단에 인턴십 전담요원 배치 여부
- 전공별 현장적합도 주기적 평가 여부(산학협력가족회사 임직원과 교수간 교육과정 협의 활성화)
-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 편성 여부

* 산업단지 캠퍼스 교육과정 편람, 현장실습 운영규정, 캡스톤디자인 운영규정, 선취업·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제도 관련 자료 별첨

3) 공동연구

○

※ 작성요령

-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공동연구 전략 기술

4) 기업지원 활성화

○

※ 작성요령

-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기업지원 전략 기술(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 학생들의 지역 내 산업체 취업을 위한 방안 기술

5) 기타

○

※ 작성요령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표 및 도식)
- 지자체, 연구소, 산업단지공단, 협회, 금융 및 벤처캐피탈, TP 등 종합적 네트워크 작성 (운영방안, 필요성 및 역할 등 기재)
-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내용 및 추진의지, 산업단지 주력업체와의 협력 강화 전략 (임금, 복지 등 고용 정보 공유, 기업 연계 교육 및 기업 지원 등)
- 기타 산업단지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2. 기대효과(한글 : 휴먼명조 15pt, 진하게)

○

※ 작성요령

- 정부의 지역발전 및 산업단지 캠퍼스를 통한 정책적 의도 실현 가능성
- 현장적합형 산업인력 및 연구인력 양성 가능성, 고용 및 취업 촉진 정도 등
- R&D 등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가능성

IV. 산업단지 캠퍼스 투자 계획

1. 이전 경비 조달 계획

가. 시설 소요경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별 소요경비			연도별 소요경비				
	교지 매입비	건축비	계				...	계
금액								

- * 교지 매입비 기준은 최초 구입가 또는 감정가
- * 교지 임차료는 교사 건축비에 포함하여 산정
- * 교지 및 교사 임차시 임차료 및 리모델링 비용 포함 계상

나. 연도별 시설 운영비

(단위 : 백만원)

시설	시설수(면적(m ²))			운영비		
	Y	Y+1	Y+2	Y	Y+1	Y+2
합계						

- * 교육기본시설은 반드시 포함하며, 그 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등을 대상으로 함

2. 자금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재원구분	금액	비고
교비회계	...		
	...		
	소계		
법인회계	...		
	...		
	...		
	소계		
합 계			

붙임 1.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교무회의 회의록 사본

3. 이전학과 교수 및 학생 동의서

4.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등 산학협력 교원인사체제 관련 자료

5. 교육과정 개편 관련 자료

6. 교사 및 교지 확보 관련 부대서류

(교지·교사 매입(임대차)계약서, 건축설계도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교육환경평가 적합 판정 공문, 자금조달 관련 증빙자료 등)

Contents

〈목 차〉

I.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개요

1. 본교 현황
2. 산업단지 캠퍼스 개요

II.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추진 현황

1. 교육연구 여건 확보
 - 가. 학과·전공·계열간 연관성 구비
 - 나. 교원확보 현황
 - 다. 교지·교사 확보 현황
 - 라. 교사시설 용도별 구성
 - 마. 교육환경평가 결과
2.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기준 충족 현황
 - 가. 위치
 - 나. 교원인사체제 개편
 - 다. 교육과정 개편
 - 라. 기업지원 활성화
 - 마. 기타
3. 설립계획 이행 추진 현황
 - 가.

III.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투자 현황

1. 교지 매입비(또는 임차료)
2. 교사 건축비(또는 임차료)
3. 연도별 시설 운영비
4. 자금조달계획 대비 실적

붙임 : 증빙자료

I.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개요(한글 : 휴먼명조 16pt, 진하게)

1. 본교 현황(한글 : 휴먼명조 15pt, 진하게)

- 본교 위치 : (한글 : 휴먼명조 15pt)
- 규모

(기준 : 최근 정보공시자료)

구분	교지(㎡) (기준면적)	교사(㎡) (기준면적)	계열별	교원			학생 (입학/편제정원)	
				전임	겸임 초빙	합계	대학	대학원
OO캠퍼스	()	()					/	/
							/	/
							/	/
			합계				/	/

※ 작성요령

- 교지·교사 면적 란 중 기준면적은 ()로 표시

2. 산업단지 캠퍼스 개요(한글 : 휴먼명조 15pt, 진하게)

- 산업단지 캠퍼스 위치 : (한글 : 휴먼명조 15pt)
- 이전 시기 :
- 이전대상 및 규모

(기준 : 최근 정보공시자료)

구분	학과	교원(명)					학생 (입학/편제정원)	
		전임			겸임 초빙	합계	대학	대학원
		상근	비상근	소계				
OO캠퍼스							/	/
							/	/
							/	/
	합계						/	/

※ 작성요령

- 이전 대상 학과(학년)의 편제 정원을 기준으로 교지·교사 기준면적 산출
- 상근은 전임교원 중 교수연구실을 본교에서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는 교원

- 입지여건

-

※ 작성요령

- 본교,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캠퍼스를 각각 이격 거리와 함께 지도상에 표현

II.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추진 현황(한글 : 휴먼명조 16pt, 진하게)

1. 교육연구 여건 확보(한글 : 휴먼명조 15pt, 진하게)

가. 학과·전공·계열간 연관성 구비(한글 : 휴먼명조 15pt, 진하게)

-

나. 교원확보 현황

(기준 : 확보현황은 최근 정보공시자료)

구분	참여교원(명)											
	OO학과				OO학과				OO학과			
	전임		겸임	소계	전임		겸임	소계	전임		겸임	소계
	상근	비상근	초빙		상근	비상근	초빙		상근	비상근	초빙	
법정정원(명,A)												
현원(명,B)												
(산업체경력)	()		()	()	()		()	()	()		()	()
확보율(% ,B/A)												

※ 작성요령

- 법정정원, 현원, 산업체 경력 교원은 이전하는 학과(학년)의 편제정원 비율로 산출
- 겸임·초빙교원은 주당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인원을 기재하며, 산업체 경력은 3년 이상
 - 전체 겸임·초빙교원 수업시수를 합산하여 9로 나누며, 소수점이하는 절사함
- 설립 인가 신청 시까지 편제완성 정원 기준 법정 교원 수의 1/2이상을 충족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개교 예정일 전까지 학생 정원기준에 따른 법정 교원 수 이상 충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
 - 편제완성년도 전까지 확보해야하는 교원에는 전임교원 외에 겸임교원 등 포함 가능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4항,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

다. 교지·교사 확보 현황

○ 교지

계열별	학과	학생정원 (명)	확보 현황			소유 현황		
			기준 (㎡)	확보 (㎡)	확보율 (%)	설립주체 소유	공동소유	임차
OO계열	OO학과					.		
	OO학과							
	소계							
OO계열	OO학과							
	OO학과							
	소계							
합계								

○ 교사

계열별	학과	학생정원 (명)	확보 현황			소유 현황		
			기준 (㎡)	확보 (㎡)	확보율 (%)	설립주체 소유	공동소유	임차
OO계열	OO학과					.		
	OO학과							
	소계							
OO계열	OO학과							
	OO학과							
	소계							
합계								

○ 안정화 방안(임차시 작성)

- (한글 : 휴면명조 15pt)

※ 작성요령

- 교사·교지를 임차하여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7년 이상 유지 필요

라. 교사시설 용도별 구성

구분		면적(㎡)	실수	비고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				
지원시설	체육관				
	...				
연구시설	일반	연구용실험실			
		...			
	산학	산학융합연구실			
		Business Lab.			
		Information Center			
		기타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등			

*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의 구분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별표2에 의함

마. 교육환경평가 결과 : 적합(증빙자료 첨부)

2.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기준 충족 현황

가. 위치

○

※ 작성요령

○ 산업단지 캠퍼스 조감도(도식), 교육용 기본시설 및 주요시설 표기

나. 교원인사체제 개편

○

*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원업적평가 규정, 교원인사규정 등 관련 자료 별첨

구분	단과대학	학과	교원업적평가								재임용·승진심사	
			산학협력 실적 반영 비율	산학협력 중심형 평가 가능 여부	SCI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배점						연구실적물 최소기준 설정 여부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최소기준 대체 가능 비율
					기술 이전 (1천만원)	기술 자문 (10회)	국내 특허 등록 (1건)	해외 특허 등록 (1건)	산학협력 공동 연구 (1천만원)	현장 실습 지도 (10회)		
현행												
변경												

※ 작성요령

【단과대학】 : 단과대학별로 현황이 다를 경우, 분리하여 기재. 전체 단과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통적용’으로 기재

【학과】 : 단과대학 내 학과별로 현황이 다를 경우, 분리하여 기재. 단과대학 내 전체 학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통적용’으로 기재

【산학협력 반영 비율】 : 교원업적평가 시 총 점수에서 산학협력 영역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산학협력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산학협력 중심형 평가 가능 여부】 : 교원업적평가 규정상 학과별 또는 교수별로 적용가능한 ‘산학협력 중심형’ 평가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

【SCI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배점】 : SCI 논문 1편당 교원업적평가 반영 점수를 100점으로 할 경우, 각 산학협력 지표의 상대적 점수를 기재

【연구실적물 최소기준 설정 여부】 : 재임용·승진심사 시 연구실적물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대체 가능 비율】 : 재임용·승진심사 시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최소기준을 대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비율을 기재. 연구실적물 최소기준이 없거나,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최소기준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 (예) 승진 시 연구실적물 최소기준이 논문 6편(또는 100점)이고, 산학협력 실적으로 최대 논문 3편(또는 50점)까지 대체 가능한 경우, 50%로 기재

※ 재임용 또는 승진단계(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별로 대체 가능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평균 비율로 기재

【교원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규정】 : 교원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규정을 PDF 파일로 첨부

〈필수 포함 사항, 고시 제7조〉

- 교원임용 시 산업체 경력자 우대 방안
- 교원임용 시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 70% ~ 100%

- 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시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게재 등의 연구실적으로 대체·환산 여부 및 정도, 교원업적평가시 교육, 연구, 봉사 이외에 산학협력 실적 별도 평가 여부를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
- * 교원업적평가 규정은 개정 전후비교표 작성

〈자율 기재 사항〉

- 호봉 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 비율 환산을 제고, 산업체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여부
- 산학협력중점 교수제 도입 여부

다. 교육과정 개편

○

※ 작성요령

〈필수 포함 사항, 고시 제8조〉

- 정규 교과목으로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Capstone Design) 도입 현황
- * 현장실습 시기(학기중, 계절학기), 현장실습 업체, 학과별·업체별 현장실습 인원 적시
- 학과별 이수체계도(학년별로 이전할 경우 전공과정, 교양과정, 일반과정의 교육장소 명시)
- * 이전학과 및 이전학년의 교육과정 전후비교표 작성
- 선취업·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과정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 편성 현황

〈자율 기재 사항〉

- 취업연계형 교육프로그램 개설 여부
- 맞춤형 재학생 진로 지도 교육, 재직자 교육 지원 프로그램
- 산학협력가족회사에 인턴제 확대 및 산학협력단에 인턴십 전담요원 배치 여부
- 전공별 현장적합도 주기적 평가 여부(산학협력가족회사 임직원과 교수간 교육과정 협의 활성화)
-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 편성 여부

* 산업단지 캠퍼스 교육과정 편람, 현장실습 운영규정, 캡스톤디자인 운영규정, 선취업·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제도 관련 자료 별첨

라. 기업지원 활성화

○

※ 작성요령

-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기업지원 전략 기술(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 학생들의 지역 내 산업체 취업을 위한 방안 기술

마. 기타

○

※ 작성요령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표 및 도식)
- 지자체, 연구소, 산업단지공단, 협회, 금융 및 벤처캐피탈, TP 등 종합적 네트워크 작성 (운영방안, 필요성 및 역할 등 기재)
-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내용 및 추진의지, 산업단지 주력업체와의 협력 강화 전략 (임금, 복지 등 고용 정보 공유, 기업 연계 교육 및 기업 지원 등)
- 기타 산업단지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설립계획 이행 추진 현황

가.

○

※ 작성요령

- 설립 계획 승인시 보완 등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 여부

III.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투자 현황(한글 : 휴먼명조 16pt, 진하게)

1. 교지 매입비(또는 임차료)(한글 : 휴먼명조 15pt, 진하게)

○

※ 작성요령

- 교지 매입비 기준은 최초 구입가 또는 감정가

2. 교사 건축비(또는 임차료)

○

※ 작성요령

- 교사 임차시 임차료 및 리모델링 비용 포함 계상

3. 연도별 시설 운영비

(단위 : 백만원)

시설	시설수(면적(m ²))			운영비		
	Y	Y+1	Y+2	Y	Y+1	Y+2
합계						

* 교육기본시설은 반드시 포함하며, 그 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등을 대상으로 함

4. 자금조달계획 대비 실적

○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재원구분	계획	실적	비고
교비회계	...			
	...			
	소계			
법인회계	...			
	...			
	...			
	소계			
합 계				

- 붙임 1.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교무회의 회의록 사본
3. 이전학과 교수 및 학생 동의서
4.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등 산학협력 교원인사체제 관련 자료
5. 교원확보 계획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6. 교육과정 개편 관련 자료
7. 교사 및 교지 확보 관련 부대서류
(등기부등본, 건축설계도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교육환경평가 적합관정 공문 등)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매뉴얼

IV

참고자료

IV. 참고자료

1 설립계획 및 인가신청 체크리스트

산업단지캠퍼스 설립계획 승인 신청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내용	확인	비고
이전 위치의 적정성	이전 위치의 산업단지 안 또는 인접 여부	✓	본교 기준 3.5km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적합' 판정받았는지 여부	✓	'24.9.9.
교육연구여건	산업단지 특성과 이전 학과의 연관성 여부	✓	
	캠퍼스 장기 사용 가능성 여부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현장실습학기제 및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선취업·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제도 등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운영	교원 채용시 경력자 우대제도 실시 계획 여부	✓	
	교원 업적평가와 승진·승급 및 재임용에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소로 반영하는 계획 여부	✓	
교육여건	기숙사, 장학금 제도 마련 여부	✓	
	본교-이전 캠퍼스 간 접근권 확보 여부 (셔틀버스, 시내버스 노선 연장 등)	✓	
	학생 편의시설(식당, 휴게시설) 및 공기질 개선 방안 여부	✓	
계획 수립 절차 적정성	학교법인 이사회(교무회의) 의결 여부	✓	
	대학 교직원 및 학생 의견수렴 여부	✓	

항목	점검내용	확인	비고
교지확보 계획 (해당유형 중 택1)	토지 소유·매매계약·임차계약 중 1가지 유형 해당 여부	✓	소유
	개인이 자기 소유 또는 매입을 통한 소유 후 학교법인에 출연을 약정했는지 여부		
	기타 교지확보계획의 타당성을 인정 가능 여부		
교사확보 계획 (해당유형 중 택1)	(신축) 건축사 작성 평면도 및 예상 건축비 산정자료 제출과 건축재원 증빙	✓	
	(기존건물 매입·분양·임차 후 리모델링) 건물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를 제시하고 해당 비용 확보 방안		
	(기부) 건물 출연약정서, 기부 후 리모델링시 비용 산정 및 확보 방안		
	기타 교사확보계획 타당성 인정 가능 여부		
제출서류 (대학설립·개편 심사위원회)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교무회의 회의록 사본	✓	
	이전학과 교수 및 학생 동의서	✓	
	교원인사체제 구축 관련(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등)	✓	
	교원 확보 관련 부대서류(전임교원 총원 확약서 등)	✓	
	교육과정 개편 관련 자료	✓	
	교사 및 교지 확보 관련 부대서류	✓	

산업단지캠퍼스 설립인가 승인 신청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내용	확인	비고
변경사항 적정성 (해당시)	당초 계획(설립계획 승인 기준) 대비 변경사항 등 적정성	✓	
산학협력 친화형 시스템	교원 채용시 산업체 경력자 우대제도, 승진·승급 및 재임용시 산학협력 요소 반영 여부	✓	
	교육과정에 현장실습학기제 및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선취업·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제도 등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이 있는지 여부	✓	
교원 확보 현황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원 확보 기준 충족 여부	✓	
교지 법정기준 충족	이전 예정 토지의 학교법인 소유권(또는 임차권) 확보 여부	✓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법정 기준 면적 충족 여부	✓	
교사 법정기준 충족	해당 건물에 대해 학교법인의 소유권(또는 임차권·분양권) 확보	✓	
	해당 건물의 연면적이 법정 기준 면적 충족 여부	✓	
	해당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교)로 지정 여부	✓	
교육 여건 확보	이전하는 산업단지와 학과·전공·계열간 연관성 여부	✓	
	학생 교육여건 관련 기숙사, 장학금 제도 등 마련 노력 여부	✓	
기업지원 활성화	산업체와의 상호 협력 노력 여부	✓	
	학생들의 지역 내 산업체 취업 지원 노력	✓	
이행 상황 보고	설립 계획 승인시 보완 등 요청 사항 이행 여부	✓	
제출서류 (대학설립·개편 심사위원회)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교무회의 회의록 사본	✓	
	이전학과 교수 및 학생 동의서	✓	
	교원인사체제 구축 관련(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등)	✓	
	교육과정 개편 관련 자료	✓	
	교사 및 교지 확보 관련 부대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설계도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교육환경영향평가 적합판정 공문 등	✓	

2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재정지원 사업 현황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현황

순	대학 (이전구분)	이전 학생 (학과)	산업단지	교지 (㎡)	교사 (㎡)	인가일자 변경인가
1	한밭대 (이전)	213명(3개) 응용화학과, 생명공학과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	6,896	5,822	'12.5.17.
2	조선대 (이전)	230명(4개) 금속재료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등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10,280	12,020	'12.5.17.
3	경남정보대 (전문)(이전)	440명(3개) 첨단방송영상계열, 모바일콘텐츠계열 등	부산센텀시티 산업단지	12,044	34,819	'12.3.9. '12.11.20. '17.9.26.
4	창원대	1,336명(7개) 기계공학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등	창원국가 산업단지	784,601	191,765	'12.5.17. '14.4.25.
5	배재대 (이전)	352명(4개)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	8,025	7,773	'12.3.9. '12.9.27.
6	동서대 (이전)	400명(3개) 영화과, 뮤지컬과 등	부산센텀시티 산업단지	4,488	12,768	'12.12.21. '17.9.26. (학과변경)
7	한남대 (이전)	1,303명(5개) 생명시스템과학과, 화학과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	94,984	22,462	'13.8.8.
8	경기과기대 (전문)	1,035명(5개) 정밀기계과, 금형디자인과 등	시흥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	80,340	51,362	'14.9.5.
9	인천대	1,144명(4개)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등	송도지식 정보산업단지	694,824	246,578	'15.9.4.
10	남부대	636명(4개) 한방제약개발학과, 통합의료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IT 디자인과	광주연구개발 특구산업단지	116,071	59,588	'16.7.1.
11	신안산대 (전문)	1,225명(6개) 기계과, 전기과, 기계설계과, 전자정보통신과, 건설정보시스템과, 산업경영과, 멀티미디어콘텐츠과	안산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	480,529	65,404	'16.8.18.
12	대구한의대	1,195명(7개) 화장품약리학전공, 화장품소재공학전공 등	대구 연구개발특구	423,542	120,088	'12.2.29. (변경인가)

순	대학 (이전구분)	이전 학생 (학과)	산업단지	교지 (㎡)	교사 (㎡)	인가일자 변경인가
13	두원공과대 (전문)	1,098명(3개) 자동차과, 소방방재학과, 건축설비소방학과	장원일반 산업단지	306,429	58,145	'16.9.1. (사업시작일)
14	대구 가톨릭대	925명(5개) 신소재화학공학과, 산업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안경광학과	대구 연구개발특구	875,501	260,328	'18.11.1. (사업시작일)
15	한국산업 기술대	3,427명(6개)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등	시흥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	174,684	116,596	'12.6.25. '13.2.21. '14.4.25.
16	군산대	367명(3개) 제어로봇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등	군산2국가 산업단지	12,410	7,606	'13.9.30. '14.1.28.
17	군장대 (전문)	80명(1개) 조선융합전공	군산2국가 산업단지	12,410	1,967	'13.9.30.
18	금오 공과대	180명(2개) 메디컬IT융합과, 광시스템공학과	구미국가 산업단지	40,690	4,115	'13.12.31.
19	경운대	160명(2개) 모바일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구미국가 산업단지	1,495	3,418	'14.5.12.
20	구미대 (전문)	140명(1개) 컴퓨터정보전자과	구미국가 산업단지	1,286	2,898	'14.5.12.
21	충북대	360명(2개) 약학과, 제약학과	오송생명과학 산업단지	13,959	12,695.5	'15.3.17. '17.2.20.
22	청주대	130명(1개) 바이오메디컬학과	오송생명과학 산업단지	4,959	2,415.7	'15.3.17.
23	충북도립대 (전문)	120명(1개) 바이오생명약학과	오송생명과학 산업단지	4,959	2,421.9	'15.3.17.
24	전북대	112명(1개) 융합기술공학부	군산2국가 산업단지	12,410	3,684	'15.5.28.
25	목포대	255명(4개) 조선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등	대불국가 산업단지	12,658	8,394	'15.9.4.
26	호원대	100명(1개) 자동차기계공학과	군산2국가 산업단지	12,410	2,044	'15.12.29.
27	호서대	504명(3개) 신소재공학과, 로봇자동화공학과 등	석문국가 산업단지	33,085.6	16,608.2	'17.2.20.

순	대학 (이전구분)	이전 학생 (학과)	산업단지	교지 (㎡)	교사 (㎡)	인가일자 변경인가
28	경상대	201명(2개) 기계융합공학과, 기계항공공학부	경남창원 국가산업단지	5,285	4,173	'17.8.7.
29	경남대	67명(1개) 기계공학부			1,391	
30	마산대 (전문)	67명(1개) 융합전자과 1~2학년			1,391	
31	울산대	604명(2개) 첨단소재공학부, 화학과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	41,948	15,016	'18.2.23.
32	한국해양대	288명(3개)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공학과, 기계공학부(조선기자재공학전공)	미음지구 산업단지	13,659	11,502	'19.2.12.
33	전남대	224명(5개) 화공안전, 화공생명, 환경시스템, 기계시스템, 플랜트공학	여수국가 산업단지	4,074	4,827.97	'19.8.12.
34	목포대	274명(2개) 전기및제어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나주혁신 산업단지	6,733.9	5,621.88	'19.8.12.
35	전남도립대	80명(2개) 신재생에너지전기과, 스마트에너지정보통신과	나주혁신 산업단지	6,733.9	1,218.3	'19.8.12.
36	제주대	216명(3개) 화학·코스메틱스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제주첨단 과학기술단지	12,205	4,395	'20.8.11.
37	인하대	413명(4개) 항공우주학과, 메카트로닉스학과 등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33,223.8	17,890.0 3	'20.8.11.
38	극동대	145명(1개) 친환경에너지공학과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12,482.8	3,613.66	'22.9.7.
39	청주대	175명(1개) 에너지융합과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15,887.2	3,559.99	'22.9.7.
40	전남대	200명(1개)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16,500	4,523.1	'23.7.24.
41	충북대	165명(1개) 의예과	오송생명과학산업 단지	4,950	7,023.07	'24.5.3.
42	대구 가톨릭대	253명 반도체전자공학과, 로봇공학과, 전기공학과	경산지식산업지구	3,712	4,305.65	'24.6.11.

3 관련 법령

< 대학설립·운영 관련 >

①	고등교육법	58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58
③	사립학교법	59
④	사립학교법 시행령	62
⑤	대학설립·운영 규정	65
⑥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67
⑦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67
⑧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⑨	산업단지 캠퍼스 및 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71
⑩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87
⑪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평가관리·사업비 집행 지침	90

< 도시계획·건축 관련 >

⑫	수도권정비계획법	127
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28
⑭	건축법 시행령	135
⑮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42
⑯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2
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6
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목변경 관련)	147
⑲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7
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8
㉑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1

■ 대학설립·운영 관련 ■

1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현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④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⑤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3.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전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전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5.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

③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처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5억원 미만)인 경우
 4.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 등”이라 한다)의 회계별로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에서 용자받는 경우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의무의 부담가액은 해당 부담가액을 포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1) 교비회계등의 의무의 부담가액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 2) 교비회계등의 회계별 차입비율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나. 가목 외의 학교법인 :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⑥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 담보제공, 용도 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 간 통폐합(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로서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3.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5. 그 밖에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 ③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재산목록
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①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산사유
2. 재학생처리계획
3. 교직원처리계획

4. 이사회회의록 사본
 5.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장려금의 지급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입 신청
- ②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2. 재산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4.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내역(법 제3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익법인의 정관(법 제3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 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산·학·연 클러스터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사 : 별표 3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2. 교지 :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제3조(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⑨ 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6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2.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③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 목적, 규모 및 사업 등을 위한 공사의 예상 기간 등을 기재
2. 제1항제2호의 내용 : 평가 대상에 관한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3. 제1항제3호의 내용 :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4. 제1항제4호의 내용 :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④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2. 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 2의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 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등인 경우 :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나. 가목 외의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한다.
-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⑦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작성자에게 이를 보완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⑧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9

산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2024.7.10.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2(2022.11.18.)호에 따라 지정 고시된 17개의 산학융합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산학융합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기업의 연구 활동 지원 등 산학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의 산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산학융합지구”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주관부처”라 함은 사업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기관으로, 제1호의 사업은 교육부를, 제2호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6. “전문기관”이라 함은 주관부처로부터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기관을 말하며, 주관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한다.
8.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전문적인 정산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10.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 기관을 말한다.
11.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 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1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심의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심의·조정 사안에 따라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등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때 주관부처장관이 3인을 추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전문기관의 센터장)을 포함한 4인을 추천하여 임명한다. 단, 위원회 통합 운영시 주관부처장관이 각 2인을 추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2.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
3. 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대한 심의·의결
4. 문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요 결정사항

④ 위원회의 간사는 2인으로 하되, 간사는 주관부처 담당 과장과 전문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잔여 임기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부처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주관부처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21조에 따른 연차·단계보고서,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심의·평가 등을 위하여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업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를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 구성은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기관) ①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 및 사업 계획수립 지원
2. 사업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조정, 수행 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진도점검·단계·최종) 등 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 실태점검, 협약체결, 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문제사업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사업 결과의 보고, 성과의 활용보고서 등 제출
 7. 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의 지정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9. 수행사업의 보안 및 안전관리
 10. 연구윤리 준수 등
- ② 연구책임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서 제출(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5. 성과활용 계획 수립 및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제출
 6. 기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임의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에 파견·연수하려는 경우

2.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망, 실종, 퇴직, 형사소추 등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성격상 2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등

제3장 사업추진 절차

제9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①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관부처와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선정절차 및 일정
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
4. 신청자격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공고없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신청)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9조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별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
2.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4. 연구개발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5.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정하는 기준

- ② 주관부처장관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평가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위임받아 수행한 경우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사업 신청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⑥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⑦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⑧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조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① 주관부처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처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선정평가를 재추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평가를 재추진할 경우에는 제11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④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제13조(연구개발비 산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산정기준은 사업별 평가관리지침을 따른다.

1. 직접비
2. 간접비

- ②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비목 및 용도를 조정·제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출연금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 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
2.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 이내 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제14조(출연금 지원) ① 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중 사업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부처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 연구개발기관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 연구개발비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주관부처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현금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인건비 총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부처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의 장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명 및 협약기간
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 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0.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부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처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서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업참여 확인서를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부처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2.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변경, 단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
3. 사업기간의 변경
4.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변경
5.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
6.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의 변경
7.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8. 단계정산의 경우 연구개발비 이월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계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이월은 해당 단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제18조(협약의 해약 등) ①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규정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5.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7. 사업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8. 문제사업 또는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9. 기타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주관부처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주관부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전에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주관부처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협약이 해약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이자, 수익금 등 포함)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협약 해약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개발비가 전액 환수 조치된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에 있어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는 제1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비를 사업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 주관부처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비 직접비 비목(연구수당 제외)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협약기간 중 발생한 연구개발비 이자는 그 사업의 직접비(연구수당 제외)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1천만원 이상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당해년도 사업의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적립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⑧ 주관부처장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등을 통한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 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⑩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의2(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① 주관부처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 또는 집행시점마다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기관별 온라인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실태점검의 실시) ① 주관부처장관은 사업 수행현황,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처장관은 실태조사결과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1조(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당해년도 연차보고서를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협약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최종보고서의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보통)”,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우수”, “보통”, “미흡”, “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중단”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제1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연차·단계보고서,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⑤ 주관부처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2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단, 별도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현행 금리 또는 관리계좌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연구개발비 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주관부처장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관련 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잔액 중 출연금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출연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조치하고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장관이나 전문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비 정산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비목별 불인정기준은 사업별 평가관리 지침에 따른다.

1.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또는 연구개발비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집행내역을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정산대상 협약기간 이전이거나 정산대상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연구개발비 지출시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단, 정부출연금 지급 지연, 통합관리시스템 연계지연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자금을 선집행한 후 연구비 계좌로 다시 사용금액 만큼 다시 입금시키는 경우 제외)
7.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사업참여 제한 등)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를 준용하여 정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성과활용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를 준용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에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을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에서 취득한 시설·장비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장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기한변경) 주관부처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평가관리지침의 승인) 주관부처장관은 이 고시가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평가관리지침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기획평가관리비 예산)** ① 주관부처장관은 전문기관이 제6조의 사업 기획·평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를 사업별 출연금의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별 당해연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관리비 예산을 사업별로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 계상한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장관이 확정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관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위탁 정산기관에 제출하여 평가관리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해약 등으로 인해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한다.
- ⑦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서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를 포함하여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관리비 정산 잔액은 국고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키한) 주관부처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3.11.29.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이하 "산업단지 캠퍼스"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연구 여건 확보)** ①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내 기업과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의 특성과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전공·계열간 연관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②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에 대한 장기적 사용 방안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 구성) <삭제>**제5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 운영) <삭제>**

제6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위치)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학의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별표의 권역안에서만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안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토지(도로 또는 하천 은 제외)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교육과정 운영) 산업단지 캠퍼스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 교과목 또는 졸업요건에 포함하여야 하고, 선취업·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과정(전문대학 제외)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기준-산학협력 친화적 교원인사제도 운영) ①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의 경우 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는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게재 등의 연구 실적으로 대체·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업적평가와 승진·승급 및 재임용에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소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기준-교육여건 개선)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장학금 지원 제도 등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지원 활성화)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대학은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산업체와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대학은 학생들이 지역 내 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설립계획서 제출 및 심사)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개교 예정일은 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업단지 캠퍼스의 명칭, 위치, 학과(부), 학생 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확보 계획

3. 교지확보 계획
 4. 교원확보 계획
 5. 교육과정운영 계획
 6. 학내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결과 등 그 밖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③ 교육부장관은 계획서에 대하여 수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설립 인가 신청) ①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이행 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의 기한 내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계획 승인 및 설립 인가 통보) 교육부장관은 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설립 인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그 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를 제출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평가관리·사업비 집행 지침

1. 목적 및 적용범위

가. 목적 : 이 지침은 「산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행 및 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조성사업의 사업운영 및 평가·관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 1) **협약** : 전문기관의 장과 조성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대학의 장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업수행기간 동안 매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주관부처** : 조성사업의 사업비를 출연하는 교육부를 말한다.
- 3) **전문기관** : 주관부처로부터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하며, '규정 제6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4) **심의위원회** : '규정 제4조'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5) **주관대학** :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대학을 말하며,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6) **총괄책임자** :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주관대학에 소속된 자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주관대학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참여기관** :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대학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규정 제8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8) **국고지원금** : 주관부처가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 9) **민간부담금** :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된 주관부처의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현금 및 현물을 총칭한다.
- 10) **민간현금** : 주관대학, 지자체, 참여기관 등(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한 현금을 말한다.
- 11) **민간현물** : 주관대학 등에서 제공한 참여인력의 인건비, 토지, 건물, 기자재 등을 말한다.
- 12) **수익금** : 조성사업의 수행 및 성과활용, 기업으로부터 받은 비용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말한다.
- 13) **환수금** : 사업비 정산 결과, 목적 외 집행 등으로 제재를 받아 반납하는 금액을 말한다.
- 14) **정산금** : 사업비 정산 결과, 환수금 및 사업비 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15) **선정평가** :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신규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16) **중간평가** : 주관대학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비 조정 및 계속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17) **최종평가** : 주관대학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 최종목표 달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의 제출

가. 전문기관은 주관대학 등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미리 점검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분류하여 보완요청 등을 통해 효율적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나.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1) 전문기관은 [표 1]에 기재된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까지 미접수된 때에는 “경고공문”을 발송한다.
- 2) 제출서류가 “경고공문” 발송 후 1개월 이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접수된 때에는 “문제기관”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 3) 협약체결 시 주요 첨부서류는 [표 2]와 같다.

4. 현장실태점검, 조사 등

가. 현장실태점검 및 조사의 실시

- 1) 전문기관은 조성사업의 사업수행 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및 평가관리 등을 위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실태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가)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 등 평가
 - 나) 협약의 해약, 중단, 실패 등 문제기관에 대한 현장 정밀 실태조사
 - 다) 산학융합연구실 수행과제 등 사업의 세부관리가 필요한 경우
 - 라) 기타 사업수행, 사업비 현황 및 평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현장실태 조사 시에 전문기관은 주관부처 담당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실태조사팀을 구성하되 실태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등에 상정할 수 있다.

나. 선정평가를 위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 1) 전문기관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대학 등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면접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 또는 별도의 점검사항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가) 기존의 정부지원을 받는 기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 나) 사업신청서의 사업목표, 사업내용 등이 조성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주관 대학 등의 실질적 사업추진 능력 여부 등

다. 중간평가를 위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 1) 전문기관은 당해연도 중간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대학 등의 사업수행현황, 추진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중간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확인한다.
 - 가) 사업추진현황 : 사업목표의 달성여부, 사업수행과정의 적절성,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사업의 활용실적 등

- 나)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R&D-인력양성-고용 및 기업과 연계된 산학융합 프로그램 우수사례 등 사업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등
 - 다)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 계정 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작성 및 영수증 관리현황, 지출비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사업비로 구입한 시설·기자재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 라) 주관대학의 사업지원에 대한 추진의지 : 사업에 대한 주관대학의 지원내용 및 전용 공간 등
- 3) 산학융합연구실 수행과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별도로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최종평가를 위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 1)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아 최종수행결과, 성과활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시 면접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현장실태조사 시에 전문기관은 주관부처 담당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실태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 최종보고서 검토 및 실태조사 시에는 사업추진현황과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이 지침 “4-다-2)”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마. 사업종료 후 성과활용 평가를 위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전문기관은 주관대학으로부터 성과활용보고서를 제공받아 검토하되, 필요시 자립화 운영 실태, 수익금 관리실태, 성과활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바. 현장실태조사 결과처리

- 1) 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계속 수행이 불필요 하거나, 정부지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별도의 위원회(또는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처에 보고한다.
- 2) 전문기관은 [표 3]의 관련 서식을 참조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3) 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 시 현장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점수별 기준을 마련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가) 우수 :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당해연도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나) 보통 :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일부 미흡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 당해연도 목표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다) 주의 :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아 당해 연도 기간 내에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처리상 경미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 라) 경고 :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거의 전무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아 당해연도 기간 내에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처리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협약 위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서류의 미제출 등) 문제기관에 대해 현장 정밀실태 조사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규정 제19조' 및 이 지침 "12. 문제기관의 처리 및 제재조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사. 현장실태조사 참여 전문가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현장실태조사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때에는 [표 4]의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5. 평가

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전문기관은 조성사업의 효율적 평가·관리를 위해 주관부처 담당관, 산·학·연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산업계 전문가(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가 평가위원의 1/3 내외가 되도록 해야 한다.
- 2)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 3)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4)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실무책임자를 간사로 지정하되, 간사는 표결 등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나. 평가기준

- 1)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평가와 현장실태조사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 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 정량적 평가항목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하며, 정성적 항목은 총괄책임자의 사업설명 후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한다.
- 3) 각 평가위원별로 평가표의 세부항목에 대한 점수를 배점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합계를 취합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 순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순위를 결정한다.
- 4) 평가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별도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 5) 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서, 당해연도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가) 선정평가

주관부처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사업신청서 평가결과가 총점의 60% 이상인 대학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관대학을 선정한다.

나) 산학융합연구실 수행과제 평가

산학융합연구실은 주관대학이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수행과제 선정 등 현장형 교육을 운영하되, 산학융합연구실 수행과제에 대한 최종 결과는 전문기관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중간평가지표에 반영한다.

다) 중간평가

- ① 중간평가는 산학융합연구실 수행과제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컨설팅 위주로 평가하되, 주관부처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른 결과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평가결과 '계속'은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고,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80% 이상인 경우는 '계속(우수)', 총점의 80% 미만 60% 이상은 '계속(보통)'으로 구분한다.
- ③ 평가결과 '중단(성실, 불성실)'은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거나,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④ 평가결과 '조기종료'는 정책적 판단으로 사업의 계속적 수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80% 이상인 경우는 '조기종료(성공우수)', 80% 미만 60% 이상은 '조기종료(성공보통)'으로 구분한다.

라) 최종평가

- ① 평가결과 '성공'은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으로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추진결과 성과활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80% 이상인 경우는 '성공(우수)', 80% 미만 60% 이상은 '성공(보통)'으로 구분한다.
- ② 평가결과 '실패(성실, 불성실)'는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으로서, 당초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불량하여 성과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6) 중간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 가) 평가위원회는 '중단'으로 평가한 경우 평가의견서에 성실 또는 불성실 여부를 포함한 해당 귀책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나) 전문기관은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 주관대학은 '중단'으로 평가될 경우 전문기관 결과 통보일 이후의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 통보일 이전에 사전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라) 전문기관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고지원금으로 구축한 연구기자재, 국고지원금 잔액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규정 제24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마) 전문기관은 중간평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상대평가에 의해(총점의 70% 미만인 경우) 차년도 국고지원금을 삭감 또는 지원중단 할 수 있다. 이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관부처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바) 주관부처 장관은 단계평가 결과 우수한 주관대학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7) 최종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 가) 평가위원회는 '실패'로 평가한 경우 평가의견서에 성실 또는 불성실 여부를 포함한 해당 귀책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나) 전문기관은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고지원금으로 구축한 연구기자재, 국고지원금 잔액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규정 제24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8) 전문기관은 성과활용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기준과 양식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9)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에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10) 기타 평가관련 작성서식은 [표 5]와 같다.

다. 평가방법

- 1) 사업신청서 평가
 - 가) 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서 검토·평가 시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목표대비 추진실적,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등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하여 종합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나) 정량적 평가항목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하며, 정성적 항목은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한다.
 - ① 정량적 평가항목
 - 질적 수준 평가항목(사업내용 및 범위)의 정량적 지표를 근거로 하여 추진주체의 실적 및 능력,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반영하여 배점한다.
 - ② 정성적 평가항목
 - 기관의 사업 수행체계, 대학체제 개편, 현장형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 지역산업체와의 연계성 및 고용 확대 등을 고려한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한 타당성 및 실효성에 역점을 두어 배점한다.

2) 사업결과 평가

- 가) 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사업결과 심의에 있어서 사업 목표의 달성도,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산학융합연구실 수행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공동활용성과 및 우수지원사례 등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평가 시에는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성과 활용계획, 사업종료 이후의 자립화방안 등을 최종평가에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나) 평가위원회는 사업결과 검토·평가 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사업추진 시 보완해야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 주관대학의 차년도 사업계획서 수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보고 및 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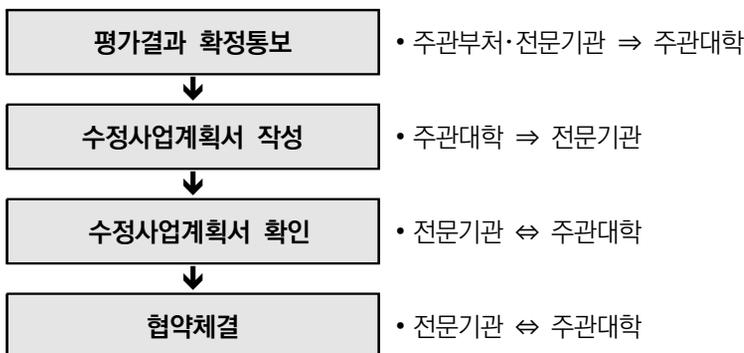
- 1) 전문기관은 선정, 중간, 최종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주관대학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공지할 수 있다.
- 2)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기관 또는 주관대학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마.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전문기관은 선정, 중간, 최종평가 등 동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표 4]의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위원장에게는 위원장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6. 협약의 체결

가. 협약(재협약)절차



- 1) 전문기관은 연차별 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주관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주관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내용 및 사업비 편성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타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정·보완 사항을 추가 확인 받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한다.
- 3) 사업비 관리통장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협약 전 주관대학의 통장으로 전액 입금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입금 예정일 등이 명시된 공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4) 기타 [표 2]의 협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나. 협약일 산정

- 1) 신규사업의 협약일
협약기간은 협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주관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계속사업의 협약일
협약기간은 당해연도(사업 연장기간 포함) 사업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협약의 변경

가. 협약의 변경

- 1) 협약의 변경은 '규정 제18조'에 따른다. 주관부처 장관은 필요시 주관대학에 대해 협약 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에 따른 재협약을 할 수 있다.
- 2) 주관대학이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요청 및 관련서류를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승인사항
 - 가) 사업목표 및 주관대학의 변경
 - 나) 당해연도 총 사업비 변경, 단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
 - 다) 사업기간의 변경
 - 라) 총괄책임자의 변경
 - 마) 기자재 및 시설을 다른 종류로 변경하거나, 다른 구조·용도로 변경하는 경우(3천만원 이상)
 - 바) 이자 또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비목별 10% 이상의 사업비 변경
 - 사) 참여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주관부처 장관은 “3) 승인사항의 마)호 부터 사)”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대한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임한다.
- 5) “3) 승인사항의 바)” 중 ‘비목별 10% 이상의 사업비 변경’이라 함은, 인건비의 변경 등 각 비목 내의 변경, 간접비의 직접비로의 변경 등 각 비목간의 변경을 말하며, 비목 내 변경단위는 [표 6]에 제시한 세목 단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변경요청 처리절차 및 기준

- 1) 변경요청 공문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주관대학에 지연사유를 통보한다. 다만, 평가위원회 개최 또는 서류보완으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처리일자에서 제외한다.
- 2) 전문기관은 변경요청 사항 등에 대해 내부검토 과정에서 변경요청 내용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3) 변경요청 사항별 처리절차는 “5)”의 기준을 따른다.
- 4) 평가위원회의 평가(차년도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사업계획서 내용 등)와 협약체결을 통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5) 기타 주관대학이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변경요청 검토의견서 작성

- 1) 전문기관은 주관대학의 변경승인 요청서류가 접수되면,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 2) 전문기관이 변경사항의 검토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평가위원은 협약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라. 협약 전 변경

- 1) 주관대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협약 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승인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전문기관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내부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평가위원회 및 협약체결을 통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마. 협약의 해약

주관부처 장관은 신규 및 계속과제의 협약대상 대학이 ‘규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8. 사업비 계상기준

가. 사업비의 신청

- 1) 사업비는 '규정 제14조' 및 [표 6] 세부비목별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신청한다. 전문 기관은 협약 사업계획서상의 비목편성에 대해 추가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관 대학으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다.
- 2) 증빙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내부거래, 참여기관에서 생산·판매 중인 시작품·견본품, 기자재 등의 거래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 3) 참여기관은 주관대학의 사업비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나. 국고지원금

- 1) 정부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처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주관부처 장관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본사업비, 대학 및 이전학과 규모, 신청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고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3) 주관부처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 시 감점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 가)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총점의 70% 미만인 경우
 - 나) 산학융합연구실 수행과제 최종평가의 평가결과가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
 - 다) 당해연도 민간현금 또는 현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 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정산결과 환수금이 10% 이상인 경우
 - 마) 기타 주관부처 장관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4)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주관대학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5) 주관부처 장관은 국고지원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다. 민간부담금

- 1) 민간부담금은 주관부처의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현금 및 현물로 구성된다.
- 2) 민간부담금은 주관대학, 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한 토지, 건물, 기자재, 인건비, 대응투자금 등을 포함한다. 주관대학은 반드시 동 사업 구축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거나, 확보계획이 있어야 한다.

- 3) 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입금 예정일 등이 명시된 공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4) 민간부담금이 현물(토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 이내에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부에서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20% 이내에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 5) 시설 및 기자재의 임차비는 전용공간내 설치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인감정평가가격(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제시한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20% 이내에서 현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공인감정평가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다.)

라. 인건비

- 1) 인건비는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관대학 등에 소속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 대한 내부인건비, 주관대학 등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산정한다.
- 2) 인건비 기준단가는 주관대학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여액으로 한다. 실지급여액은 연봉 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공고시 공지된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기 수행사업의 사업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율 적용 시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수행 사업과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이중 계상이 불가하므로 참여율만 계상하도록 한다.
- 5) 인건비는 현물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가) 현물 산정기준
 - ①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정규직
 - ②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 나) 현금 산정기준
 - ①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비정규직 참여연구원, 연구전문 인력 및 학생연구원
 - ② 주관대학 등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단, 원 소속기관의 장이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프리랜서는 주관대학과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정부 재정지원 비율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참여율에 따라 현금 계상 가능
 - ④ 국외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 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⑥ 주관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국고지원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가)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나) 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라)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관부처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 7) 신학융합연구실 연구과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세부 기준 및 참여율 계상 방법은 [표 9]의 기준을 따른다.

마. 직접비(인건비 제외)

- 1) 직접비 세목은 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업(연구)활동비 등의 실 소요금액 기준으로 집행하며, 연구수당 이외의 세목은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직접비는 사업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 3) 시설·기자재·장비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고, 주관대학의 장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기자재 및 시설 구입과 관련하여 각 사업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 4) 기자재는 해당년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여 해당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품된 경우 집행을 인정하나, 최종년도는 해당년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납품을 인정할 수 있다.

- 5) 사업(연구)활동비는 교보재 제작비용, 사업홍보·성과확산비용, 기술정보수집비용, 원고료, 강사료, 위원회 운영비용(내부위원 수당 제외), 여비, 기술정보처리비용, 기술수요조사 비용, 기술지도비, 사업운영비용(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비, 신규사업 창출 및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활동을 위한 융합·창의활동 지원비 등), 회의비용, 제값비용, 회계정산비용 등을 계상할 수 있다.
- 6) 사업의 검증, 타당성 조사, 성과확산, 사업별 자문 등을 위한 기업지원(기술지도·이전), 현장지도(현장실습학점제 등) 등에 활용할 전문 인력을 위한 기술지도비를 편성할 수 있다. 기술지도비는 [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1인 월 100만원 이내에서 집행하며, 관련서류(회의록, 서명, 일지 등)는 주관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대학교원의 경우 정규수업 이외의 기술지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7) 참여인력에게 기술지도비(학생 지도를 위한 지도수당 포함), 강사료,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총 금액 30,000천원/년, 1인당 3,000천원/년을 초과할 수 없다.
- 8) 기술교육, 교육훈련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한 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등에 활용할 전문가를 위한 강사료(발표수당 등)를 편성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표 7]에 기준을 따른다. 단, 대학교원의 경우, 정규수업 이외의 강좌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9)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보재의 제작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한 전문 인력을 위하여 원고료를 편성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표 7]에 기준을 따른다.
- 10) 사업(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주관대학의 「여비 규정」 지급기준을 준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주관대학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대학 자체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단가를 활용하여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 11) 현장형 교과과정, 선취업-후진학(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산학융합연구실, 프로젝트 Lab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비 등은 사업(연구)활동비로 일괄 계상할 수 있다.
- 12) 사업(연구)활동비 중 논문 게재료 명목으로 개인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지급할 수 없다.
- 13) 사업(연구)활동비 중 장학금은 주관부처 장관이 인정한 경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편성할 수 있다.
 - 가) 장학금은 민간부담금(현금 기준)의 50% 이내로 편성하되, 총 금액 50,000천원/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장학금 지급 인원은 산업단지 캠퍼스 이전학생수(편제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 다)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와 지급기준, 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14) 사업(연구)활동비 중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인건비의 10% 이내로 편성할 수 있으며, 총괄책임자와 참여인력에 대한 보상·장려금을 계상할 수 있다.

- 15)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탁정산 수수료 및 보고서 인쇄비 등은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바. 간접비

- 1) 주관대학은 간접비를 당해연도 총사업비(현금 기준)의 10%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 2) 간접비는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3) 사업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주관대학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 4) 편성된 간접비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관공통경비,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보안을 위한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등을 계상할 수 있다.

사. 기타

- 1) 영리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2) 당해연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직접비 세부비목으로 이월할 수 있다. 이 때 해당년도 사업종료 전 주관대학 자체 이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사본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이월 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주관대학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대학은 승인 통보를 근거로 이월금을 차년도 사업비에 추가 편성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이월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9. 사업비 회계처리

가. 사업비 사용관리

- 1) '규정 제20조'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 2) 국고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수익금, 이월금으로 구분하여 별도 통장 및 계정을 설정·관리할 수 있다.
 - 가) 통장의 예금주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통장의 개설은 사업 수행 중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고수의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3) 주관대학의 장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무가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기준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4) 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다만, 주관대학의 장이 참여기관장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일괄 지급한 때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비를 일괄 지급받은 참여기관의 사업비에 대한 관리 의무는 해당 기관장에게 있다.

- 5)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중 일부를 참여기관에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계상에는 역할분담에 따른 사업비의 분리 계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6)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카드 사용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7)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 1) 주관대학 등은 사업비의 예금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직접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 2)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차년도 사업비의 발생이자에 포함한다.
- 3) 수익금은 당해연도 사업비의 직접비에 재투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수익금에 대한 비목간 계상 비율 및 계상 기준은 “8.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 4) 수익금은 차년도 사업에 활용하거나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 및 자립화를 위한 사업비로 적립할 수 있다. 이 때, 적절한 수익금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이월금 및 사업비 잔액의 처리

- 1) 주관대학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지출원인행위 또는 사용계획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이월을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승인된 이월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재이월은 할 수 없다. 다만, 전문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정산 또는 주관대학의 정산 이의신청 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 주관대학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를 통보 받아 환수금, 사업비 잔액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환수금 통장에 납부해야 한다.

10.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정산

가. 주관대학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1) ‘규정 제23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 2) 주관대학은 당해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 기관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출서류
 - 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공문 1부.
 - 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부.
 - 다)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 라) 사업비 통장사본 및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 마) 협약시의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바) 사업비 변경관련 통보 및 승인 공문 각 1부.
- 사) 기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에서 보완 또는 제출 요구하는 서류 등

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 1) 위탁정산기관은 주관대학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기타 제출서류에 대해 협약시의 사업계획서, 요령, 평가관리지침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한다.
 - 가) 정산은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때에는 면접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나) 사업비 집행이 당초 협약사항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다) 정산과정에서 각종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대학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보완토록 하여 정산에 반영한다.
- 2) 검토기준
 - 가) 사업비의 별도 통장 또는 계정 관리 여부
 - 나) 별도 장부 회계관리(지출결의서 등) 및 증빙서류 구비 정도
 - 다) 민간부담 현금의 통장입금 현황
 - 라) 비목별(사업별 범위내) 집행내역의 적정성
 - 마) 민간현물에 대한 집행 여부의 적정성
 - 바) 예금이자 및 수익금관리 현황
 - 사) 전년도 사업비의 이월금액 집행과 당해연도 사업의 사업기간 외 지출 여부
 - 아) 참여기관 관리 여부
- 3) 주요 검토절차
 - 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별도 통장 또는 계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실태, 민간부담 현금이 당초 계획대로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나) 현금 및 현물이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서의 세부비목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수행 인력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 주관대학 및 참여기관이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 추가로 부담한 현금은 그대로 인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한다.
 - 라) 직접비의 주요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시설·기자재 등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단, 전문기관이 승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마) 주관대학 등이 자체 보유한 시설 및 기자재를 현금으로 계상하거나, 설치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는 불인정한다. 또한, 동 사업비로 전년도에 구입한 장비의 임차사용료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집행한 경우에도 불인정한다.

- 바) 증빙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내부거래, 참여기관에서 생산·판매 중인 시작품·견본품, 기자재 등의 거래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 사업비 집행이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전년도 이월 금액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정산실시 및 결과통보
- 가) 전문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잔액, 이월액 및 적립금 등 정산결과를 주관대학에 통보한다.
 - 나)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대학은 결과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다) 주관대학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국고지원금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관대학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라) 국고지원금 잔액 납부를 통보 받은 주관대학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 조치를 하지 않는 때에는 독촉 및 경고를 각각 1회씩 실시한다.
 - 마) 주관대학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사업관리

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1) 주관대학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조성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가) 운영위원회는 산·학·연·관 전문가를 포함해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주관대학 소재지 산업계 인사가 50% 내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절차 등은 주관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학융합과제, 대학체제개편, 산업체 지원 등 사업별 세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다) 산학융합과제의 경우 기업으로부터의 수요조사 및 공청회 등 적절한 절차 여부에 대한 조정·검토할 수 있다.
- 2) 주관대학은 사업방향설정, 용역기관 선정, 공용장비 및 시설·기자재 구입 등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한다.
- 3) 주관대학은 동 사업으로 구축한 기자재의 폐기, 불용기자재, 반납 발생 등의 경우에는 사업별 운영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주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주관대학은 원활한 사업수행, 정보교류의 장 등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 협의회를 통해 전문기관과 주관부처에게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의 건의를 할 수 있다.

나. 기자재(공용장비) 구입·관리절차 및 범위

- 1) 주관대학은 3,000만원 이상의 기자재(공용장비)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수요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기자재의 선정은 사업별 운영위원회 또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되 관련 업계에 대한 파급효과, 활용도, 지역혁신체제와의 연계성, 기존 정부지원센터와의 중복성, 전문성 등을 검토한 후 장비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가 해당 주관대학의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3) 현물로 제공되는 시설 및 장비와 현금으로 구입하는 장비는 모두 사업관련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정부지원센터 공간과의 연계 시에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 4) 주관대학 등은 시설·기자재 및 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주관대학의 장의 책임 하에 구입한 시설·기자재 및 장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표시를 해당 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5) 관리대상이 되는 기자재는 직접비로 구입한 시설·기자재 및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 기자재 중 복수의 부품 내지 연구기자재가 모여 단일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복수 부품)된 하나의 실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사례: 컴퓨터, 모니터, 하드). 또한 세부 관리방안으로 주관대학 등이 시설·기자재 관리대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 6) 주관대학 등은 취득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가) 구축장비, 사용실적 등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인프라넷(www.infranet.or.kr) 및 NTIS(www.ntis.go.kr)에 등록 및 업데이트
 - 나)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기자재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
 - 다) 등록된 기자재에 대한 사용신청 및 예약 시스템의 활용
 - 라) 구축된 기자재 등을 활용한 교육의 참여 신청 및 관리시스템의 활용

※ 반드시 아래 표기 문구 활용

〈 기자재 관리번호 / 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

-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주관대학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꼭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 주관대학 자율부여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비를 지원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다. 기자재의 관리주체

- 1) [표 8]에 따라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시설·장비 등의 처분권은 주관부처가 소유하고, 기타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은 주관대학 등이 소유한다.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주관대학 등이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 2) 주관대학 등이 성과활용기간 만료 전에 시설·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문기관은 주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간 간 시설·장비의 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라. 발표 및 결과물의 삽입 문구

수행된 과제와 관련하여 발표하거나 결과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해당자료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의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국고지원금으로 수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영문 : This work i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through the fostering project of ○○○○)

12. 문제기관의 처리 및 제재조치

가. 문제기관 처리

‘규정 제19조’, ‘제24조’ 등에 따라 전문기관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문제기관으로 분류하고, 이를 즉시 주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며, 주관부처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의 해약, 참여제한, 국고지원금 및 잔존현물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나. 제재조치 구분

- 1) ‘규정 제19조’, ‘제24조’ 에 따라 주관부처 장관은 협약의 해약, 연차평가 결과 사업이 “중단”되거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주관대학, 참여기관 및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시설·기자재 또는 국고지원금의 환수, 기타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규정 제4조’의 심의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다. 협약해약 과제의 관리

- 1) ‘규정 제19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 이외에도 타 주관대학 등에서 유사사업을 수행 중일 경우, 당해 사업수행 결과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 2) “1)”의 경우에 협약이 해약된 주관대학의 유·무형 발생품을 연계 활용하고자 하는 타 주관대학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3) 사업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 조치 이후 기 구축결과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주관대학 등에 사업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환수금의 관리

- 1) 전문기관은 조성사업의 환수금을 별도 통장 또는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2) 전문기관은 정산결과 및 국고지원금 환수 현황을 '규정 제23조'에 따라 주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며, 주관부처 장관은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한다.

13. 기타 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등을 준용하고,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부처와 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1]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준일	제출기한	비고
계속 사업	중간보고서	당해연도(단계) 협약종료일	1개월 전	• 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작성 • 평가계획통보
	차년도 사업계획서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2개월 이내	• 정산결과통보
최종 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포함)	최종 협약종료일	1개월 이내	• 평가계획통보 • 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작성
	최종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최종 협약종료일	2개월 이내	• 정산결과통보
종료 사업	성과활용보고서	협약종료 후	매년 2월	• 사업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까지
기타	추진실적보고	협약기간 중 필요시	공문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 추진현황점검 (사업수행현황, 사업비사용실태 등)
사업비	수익금 적립승인요청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사업비 이월요청서			
	회계감사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일	2개월 이내	

[표 2] 주요 첨부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비고
협약서	조성사업 계획서 원본	3부
	주관대학, 참여기관 등의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조성사업 참여의사확인서 사본	1부
	주관대학과 참여기관(위탁기관) 간의 조성사업 협약서 사본(해당기관에 한함)	1부
	인감증명서(주관대학 등) 원본	1부
	출연금 입금구좌 제출공문 원본 및 현금부담분 납입 증빙서류	1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1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주관 및 참여 기관장)	1부

[표 3] 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서 작성서식

작성시기		작성자	작성서식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선정사업	현장실태조사자	선정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계속사업	현장실태조사자	수시 또는 상시, 중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수시 또는 상시,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의견서
최종사업	현장실태조사자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추진실적 점검		현장실태조사자	현장실태조사표
이의신청, 협약해약, 중단 및 실패 등		현장실태조사자	문제기관 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표

[표 4]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구분	과제 수(1일)	지급 한도액
현장실태조사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30만원
평가위원회 등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30만원
	• 위원장 수당 : 1일 4만원이내	
여비지급	• 주관대학 자체 여비기준을 적용하며,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단,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표 5] 평가위원 평가관련 작성서식

평가대상	작성자	작성서식 구분
신규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위원별 평가의견서
	평가위원장	종합 평가의견서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위원별 평가의견서
	평가위원장	종합 평가의견서
최종보고서	평가위원	위원별 평가의견서
	평가위원장	종합 평가의견서
이의신청	평가위원	위원별 평가의견서
	평가위원장	종합 평가의견서
문제기관	위원회위원	위원별 평가의견서
	위원회위원장	종합 평가의견서

[표 6]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 인건비(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의 합계)는 총 사업비(현금 기준)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동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으로 계상한다.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구 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시설·장비 및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 (연구)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창의활동비 등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 해당사업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출장비의 경우 국·공립 대학, 국·공립 연구 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창의활동비는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10% 범위에서 계상한다.
간접비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 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 한함) 해당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 경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한 안전 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 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사업비는 총 사업비(현금 기준)의 1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구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할 수 있다.)	

[표 기] 원고료, 강사료, 기술지도비, 위원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원고료	• 차관급이상, 총·학장 • 저명한 전문가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자		80,000원
	• 부교수, 수석급, 박사학위 취득 후 8년(이와 동등 자격 포함) 이상 경력		40,000원
	• 전임강사, 책임급,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와 동등 자격 포함) 이상 경력		30,000원
	• 상기 이외의 자		20,000원
강사료 (2시간 기준)	1급	기관장, 저명인사	500,000원 이하
	2급	책임급	400,000원 이하
	3급	선임급	300,000원 이하
	4급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200,000원 이하
기술지도(자문)비	1일 기준		250,000원 이하

[표 8] 기간에 따른 기자재의 제 권리 주체

구분		사업수행기간	성과활용 보고기간	기타기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대학 등		주관대학 등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주관부처		

[표 9] 산학융합연구실 인건비 산정 기준 및 참여율 계상 방법

구분		세부 산정 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대학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 박사이상 : 3,000천원 × 12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12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12 × 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 × 12 × 참여율
기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한다.
-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참여개월/12)로 산정한다.

구분	참여율 계상 방법
참여율	<p>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한다.
	<p>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책임자는 과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주관대학의 총괄책임자는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해야 한다. • 전문기관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대학의 총괄책임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p>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하다. • 참여과제(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의 경우 참여 연구원은 2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의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타 정부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참여연구원의 총 참여율은 60%이하로 한다.(학사 : 60만원 이하/월, 석사과정 : 108만원 이하/월, 박사과정 : 150만원 이하/월, 박사이상 : 180만원 이하/월 초과 금지) • 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장학금을 지원받는 인력에 대한 참여율은 본 사업의 인건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율을 계상한다.

■ 도시계획·건축 관련 ■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13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학교의 경우

-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 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 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 이전(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 여건의 개선 등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도시 안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수도권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各院)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
- 마. 전문대학 중 수업연한이 3년인 간호전문대학을 대학 중 간호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 1) 간호전문대학은 설립 후 10년이 지날 것
 - 2) 변경하려는 간호대학의 총학생정원은 간호전문대학의 총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3)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서울특별시 밖의 대학과 서울특별시 안의 전문대학 간 통·폐합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2) 대학 본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 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 사.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공공 청사의 경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 3) 공공법인의 사무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증설을 말한다.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입학 정원이 50명 이내인 대학(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정원이 100명 이내인 대학을 말한다. 이하 “소규모대학”이라 한다)의 신설. 다만, 소규모대학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 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2) 대학 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 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 바.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공공 청사의 경우
-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성장관리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 3) 공공법인의 사무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3. 연수 시설의 경우
- 가.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나.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 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4.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5.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 ②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
 2. 공공 청사
 3.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창고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연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 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제외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도시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 심의를 거친 것
- 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고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화(市街化)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 3)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4)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제외한다.

- 1) 6만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3)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화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 4)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거나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 관광지조성사업 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3.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학교의 경우
 -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 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
 - 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2) 대학 본부가 자연보전권역 밖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자연보전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 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5. 공공 청사의 경우
 -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자연보전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 3) 공공법인의 사무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6. 연수 시설의 경우

가.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

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은 제외한다)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7.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여러 개의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4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 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7)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층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 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같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같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 3제곱미터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라. 삭제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 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 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소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관람장·전시장만 해당한다)

- 나. 교육연구시설(학교·연구소·도서관만 해당한다)
-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15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16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1의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 것(지원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 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 ④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서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11의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
(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인수정리를 위하여 산업용지,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3.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 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14. 법무관련 서비스업
 1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16. 기타 금융 투자업
 17.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 나. 광업
 -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 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시설·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할 것
 - 나. 양식시설이 입주하려는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을 양식할 것
5.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목변경 관련)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제19조의 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開設)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9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⑤ 삭제

2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절 학교

- 4-5-2-1.**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생활권과 연계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대학은 주변의 토지이용 및 교통수단과의 접근을 고려하여야 한다.
- 4-5-2-2.** 초등학교는 생활권의 중심과 근린생활권 공원과 연접하여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공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4-5-2-3.**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매뉴얼

발행인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발행처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인 쇄 : 2024년 8월

발 행 : 2024년 8월

인쇄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매뉴얼



교육부